

고압가스 []수입업자 []등록 []운 반 자 []변경등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신 청 인	상 호		
	대 표 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)		
세 부 내 용	수입(운반)고압가스의 종류		
	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(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)	[]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(허용농도 200ppm 이하)	
		[] 차량에 고정된 탱크	
		[]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(튜브트레일러)	
[] 고압가스(LPG 포함) 용기 운반차량(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)			
		[] 탱크컨테이너	
	고압가스 운반능력 (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)		
변경사유			
변경내용 (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)		변경 전	변경 후
	사업소의 위치		
	상 호		
	대 표 자 성명		
	수입고압가스의 종류		
	저장설비의 교체, 저장설비 의 위치 또는 능력		
	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		
	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의3제1항·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[]수입업자 등록 · []운반자 등록 · []수입업자 변경등록 · []운반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 신청 시 가. 사업계획서 1부 나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,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다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. 다만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. 변경등록 신청 시 가.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1만5천원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자동차등록증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자동차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